

가상학부(BE:SANG인재학부) 운영 지침

제정 2025. 11. 03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전문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운영 규정」에 따라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가상학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심화융합 마이크로디그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본교 4대 특성화 분야에 기반한 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가상학부”란 4대 특성화 분야에 기반한 심화융합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가상의 학부단위를 말하며, 학부명은 <BE:SANG인재학부>라 한다.

② “심화융합 마이크로디그리”란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30*에 따른 4대 특성화 분야 또는 기타 특성화 분야에 부합하고, 2개 이상 학문 분야가 연계된 융합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) ① 가상학부의 학부장은 교무연구처장이 겸임하며, 학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.

② 가상학부의 학사 행정 업무는 교육기획팀에서 담당한다.

③ 원활한 교무 행정을 위하여 분야별 또는 과정별 대표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이외 가상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전문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

제4조(개설 요건 및 절차) ① 심화융합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1. 편성학점 : 12 ~ 18학점

2. 이수학점 : 12 ~ 18학점

3. 대상 학년 : 전학년

4. 기존 학과(전공) 또는 학문 분야와의 차별성 확보

5. 4대 특성화 분야 또는 기타 특성화 분야에 부합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목 편성

6. [별표 1]에서 정한 특정 인력 양성분야 연계 과정 개설 불가

7. 이수구분 : 전공선택

8. 이러닝 교과목 : 교과목 수는 전체 편성 교과목의 1/2 이내, 학점은 전체 편성 학점의 1/2 이내로 제한 (단, 소수점은 절사)

9. 기타 세부사항은 교무연구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② 이외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전문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

제5조(개설과정 선정) ① 개설 신청 과정에 대하여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.

② 평가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중 구성하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.

③ 대상 과정의 대표 또는 참여교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④ 기타 개설과정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6조(학생 이수) ① 가상학부에 편성 및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‘전공선택’으로 인정한다.

② 가상학부에 개설된 마이크로디그리 중 [별표 2]에 따른 소정 과정을 모두 이상 이수한 학생은 「다전공 이수 규정」 제7조의2(가상학부 인정 복수전공)에 의거 복수전공 인정 신청서 [별지 제1호]를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수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, 해당 과정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‘복수전공’으로 변경한다.

제7조(보칙)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학칙」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연구처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
②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,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개설되는 과정에 대한 사항은 사업단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칙(교육기획팀-549, 2025. 11. 03.)

이 지침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특정 인력 양성 분야

관련 법령 및 근거	양성 분야
(1)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3항	
① 교원 양성 분야	▸ 교사 (유아교육학과)
②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	▸ 한의사 (한의학/학과) ▸ 간호사 (간호학과)
③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	▸ 물리치료사 (물리치료학과) ▸ 임상병리사 (임상병리학과) ▸ 작업치료사 (작업치료학과)
④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	▸ (우리 대학 해당 없음)
⑤ 「수의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	▸ (우리 대학 해당 없음)

[별표 2]

복수전공 인정 과정

2025. 11. 03. 기준

전공명	학위명	참여 과정(특성화 분야)	개설일

※ 복수전공 인정 과정 구성 시마다 최신화 및 공지 예정

[별지 제1호 서식]

가상학부 복수전공 인정 신청서

소속학과(부) 및 전공	학과(부)		전공 (주, 야)
복수 학과(부)/전공	비상인재학부(가상학부)		전공
성명		학년	
학번		휴대폰	
첨부 : 성적증명서 및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각 1부 상기 본인은 학칙 제37조, 다전공 이수규정 및 가상학부 운영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복수전공 인정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: _____ (인) 교무연구처장 귀하			
【유의사항】 1. 가상학부 복수전공 인정 신청은 7학기 이내 재학생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. 2. 가상학부 복수전공 인정은 관련 지침에서 인정한 복수전공 과정에 한함.			